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구) 충남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중에 있는바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

나.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

나. 신설되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반영(24,544천원)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규 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3) 입법예고 : 2006. 9. 22 ~ 10. 12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3조중 법 제17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수탁법인”을 각각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탁법인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제4호”를 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별표 2란 다음에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명 칭	위 치	비 고
3	대전광역시으능정어린이집	중구 은행동 142-6	

제명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5조제4항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7조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 -----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제3조(입소대상) ----- ----- ----- 법 제28조 ----- ----- -----
제4조(운영관리)①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할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법인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 -----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 <삭 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탁기관 ----- ----- -----
제5조(수탁법인의 의무) ①수탁법인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 -----

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법인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법인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수탁법인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2. (생략)

[별표]

<신 설>

②수탁기관

③수탁기관

④수탁기관

제6조(비용의 보조) ----- 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1. ~ 2. (현행과 같음)

[별표]

구분	명 칭	위 치	비고
3	대전광역시 으능정이어린이집	중구 은행동 142-6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05.12.29)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신설 2005.12.2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신설 2005.12.2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 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신설 2005.12.29)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신설 2005.12.29)
-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11. 28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11. 3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11. 3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7)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응)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구)충남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설치 중인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은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

나. 신설되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별표)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구)충남여성회관내에 대전광역시립 으능정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하고(안 제1조 중), “법 제17조”를 “법 제28조”로하며(안 제3조 중), 안 제4조 제1항 단서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 “수탁법인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며(제5조의 제목)

○ 제명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안 제5조 제4항 중)

○ 각 호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안 제6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3세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정부가 영아 보육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는 만큼 공공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져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